

의 안 번 호	1957	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7. 11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7. 11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7. 29.(금)

2. 제안이유

- 민선8기 구정목표에 맞추어 역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신설, 행정기구 명칭변경·재배치 및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부서개편
 - 1) 국 명칭변경(안 3조)
 - 일자리경제국 → 미래전략국
 - 주민자치국 → 행정지원국
 - 2) 단 신설 : 정책사업단(안 제5조의2)
 - 3) 과 명칭변경(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8조)
 - 일자리기업과 → 일자리정책과
 - 경제진흥과 → 지역경제과
 - 혁신교육과 → 교육지원과
 - 행정지원과 → 총무과
 - 주민소통과 → 자치행정과
 - 여성가족과 → 가족복지과

나. 분장사무 조정

1) 미래전략국(안 제6조)

- 가) 일자리정책, 일자리지원,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사항
- 나) 지역경제, 전통시장, 농업, 축산업 등에 관한 사항
- 다) 문화예술, 문화관광, 문화재 관리, 한글도시 등에 관한 사항
- 라) 교육정책, 평생교육, 도서정책, 체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

2) 행정지원국(안 제7조)

- 가) 총무, 인사단체, 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나) 자치행정, 자치협력, 청렴감사 등에 관한 사항
- 다) 경리, 계약,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라) 세무, 취득세, 재산세, 과표 등에 관한 사항
- 마) 지방소득세, 체납정리, 세외수입관리, 통합기동징수 등에 관한 사항
- 바) 민원, 가족관계등록, 여권업무, 지적업무, 지적재조사업무, 부동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

3) 복지환경국(안 제8조)

- 가) 생활민원, 희망복지, 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나) 노인정책, 노인지원, 장애인복지,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
- 다) 여성정책, 아동보호, 청소년, 보육,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
- 라) 환경관리, 환경지도, 위생행정, 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
- 마) 환경미화, 자원순환,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바) 공원관리, 녹지관리, 산림휴양, 정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

4) 안전도시국(안 제9조)

- 가) 안전정책, 재난관리, 중대재해, 통신관계,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
- 나) 건설행정, 가로환경, 토목, 치수 등에 관한 사항
- 다) 도시계획, 도시개발, 도시재생, 도시재생시설 등에 관한 사항
- 라) 교통행정, 교통지도, 교통과정 등에 관한 사항
- 마) 광고물관리, 경관디자인, 건축허가, 공동주택 등에 관한 사항
- 바)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(설계, 심사, 감독, 준공), 문화재 · 대형 체육시설물 공사, 그 밖의 공사관련 지시사항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구정목표에 맞추어 역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신설, 행정기구 명칭변경과 재배치 및 신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것으로
- 부서개편, 정책사업단 신설과 분장사무 조정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 · 군 · 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 · 군 · 구 본청의 실 · 국이나 과 ·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 ·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 · 군 · 구 본청에 두는 실 · 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 · 군 · 구 본청의 실장 · 국장과 과장 · 담당관의 직급과 실 · 과 ·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는 관할 시 · 군 · 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실 · 국과 실 · 과 ·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 · 도와 시 · 군 · 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